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종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590

발의연월일: 2025. 4. 4.

발 의 자:윤종오·전종덕·허성무

정혜경・정준호・고민정

황운하 • 이재강 • 김준혁

민형배 · 김재원 · 염태영

이수진 • 백선희 • 한창민

김 윤 · 김종민 · 박수현

위성곤 의원(19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 개정으로 임대인의 소재불명,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 확보가 시급한 피해주택 시설관리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.

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주택을 지원하려 할 때 「사회보장기 본법」 제26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사전협의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, 피해주택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한 긴급한 조치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. 따라서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 해 전세사기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한 경우 이러한 협의 절차를 일부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됨. 또한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된 피해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피해주택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한 시설 보수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근거가 없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한편 현행법의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현 시점에도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앞으 로 있을 수 있는 새로운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현행법에 따른 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등을 위한 조치를 할 경우 「사회보장기본법」에 따른 협의 의무를 면제하고, 피해자가 피해주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 보수 등을 한 경우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,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여 전세사기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함(안 제28조의2, 법률 제19425호 부칙 제2조 등).

법률 제 호
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 중 "전세사기피해자가"를 "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" 으로 한다.

제2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연락두절 등으로"를 "연락두절, 구속 등으로"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3.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이 행한 수선 등에 대한 지원
-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자 할 경우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26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면제할 수 있다.

법률 제19425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중 "2년"을 "6년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,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"전세사기피해주택"이란 <u>전</u>	5
<u>세사기피해자가</u> 임차인인 임	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
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주택	
(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3조	
의3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후	
임차권등기를 마친 주택도 포	
함한다)을 말한다.	
6. (생 략)	6. (현행과 같음)
제28조의2(전세사기피해주택의	제28조의2(전세사기피해주택의
안전관리 및 감독) ① (생 략)	안전관리 및 감독) ① (현행과
	같음)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세	2
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등이 소	
재불명 또는 <u>연락두절 등으로</u>	<u>연락두절, 구속 등</u>
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	<u>으로</u>
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	
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	
있다.	
1.・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3.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 확

③ · ④ (생 략) <신 설>

법률 제19425호 전세사기피해 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부칙

제2조(유효기간) 이 법은 시행 후 지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.

 보를
 위하여
 전세사기피해자

 등이
 행한
 수선
 등에
 대한
 지

 원

- ③ ④ (현행과 같음)
-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자 할 경우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26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면제할 수 있다.

법률 제19425호 전세사기피해 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부칙

제2조(유효기간)	
-6 <u>년</u>	
<u>.</u>	